

# 지역혁신단 운영규정

(제정 2024. 2. 1.)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RISE체계에서의 지자체-대학 협업체계 강화와 대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혁신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지역혁신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본교의 제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**제3조(업무)** 지역혁신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RISE체계에서의 신규지원사업 수주 및 관리업무 수행
2. 지역혁신사업(RIS) 운영에 관한 사항
3.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지역혁신단 운영에 필요한 사업

## 제2장 조직

**제4조(조직 및 기능)** 지역혁신단에 지역혁신지원실, RIS사업단, 지역혁신공유협업센터를 둔다.

**제5조(단장)** 지역혁신단에 단장을 두며, 단장은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6조(행정인력)** 지역혁신단에 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실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.

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7조(설치)** 지역혁신단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8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지역혁신단장이 된다.

③ 대외부총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**제9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역혁신단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
2. 지역혁신단 운영에 필요한 교내외 의견 수렴 및 환경 분석
3. 지역혁신단의 성과분석 및 환류
4. 지역혁신단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5.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

## 제4장 재정 및 회계

- 제10조(재정 및 회계)** ① 지역혁신단 재정은 국고지원금으로 한다.
- ② 지역혁신단 재정은 본교 회계의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.
- ③ 지역혁신단 회계는 본교 관련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